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2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조계원 · 김문수
이상식 · 임미애 · 윤준병
김주영 · 문대림 · 정준호
여기구 · 이원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는 124만 3,627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2,735명, 부상자는 193만 7,785명으로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약 43조 7,670억원으로 추정됨.

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,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함.

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힘든 실정이므로, 현행법에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신속하고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체계를 마련하여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·도경찰청장이 부과·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%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(안 119조의2부터 119조의6까지).

주요내용

- 가.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함(안 제119조의2 신설).
- 나.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,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시·도경찰청장이 부과·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(안 제119조의3 신설).
- 다.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,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·관리 경비,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,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,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(안 제119조의4 신설).
- 라.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·운용하고,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등 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9조의5 신설).
- 마.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름(안 제119조의6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성일종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95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장의2(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6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장의2 도로교통안전기금

제119조의2(도로교통안전기금의 설치 등)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·관리,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,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119조의3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
2. 제3항에 따른 차입금
3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4. 그 밖의 수익금

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(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·도경찰청장이 부과·징수하는 것에 한정한다)

2.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

- ③ 경찰청장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.

제119조의4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제3조, 제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
2.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
3.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
4.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
5. 제73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
6.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
7.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
8.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
9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
제119조의5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·운용한다.

- ② 경찰청장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

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9조의6(회계연도)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) 정부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26년도 도로교통안전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 의 심의·의결 및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로교통안전기금운용계획이 심의·확정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제10장의2 도로교통안전기금</u> <u>제119조의2(도로교통안전기금의 설치 등)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·관리,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,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u> <u>제119조의3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u> <u>1.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</u> <u>2. 제3항에 따른 차입금</u> <u>3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</u> <u>4. 그 밖의 수익금</u> <u>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</u>

<신 설>

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
여야 한다.

1.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
른 과태료(제161조제1항제1호
에 따라 시·도경찰청장이 부
과·징수하는 것에 한정한다)

2.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

③ 경찰청장은 기금을 운용하
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
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
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.

제119조의4(기금의 사용) 기금은
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제3조, 제4조 및 제59조에
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에
필요한 경비에 대한 전부 또
는 일부의 지원

2.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
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
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
일부의 지원

3.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
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
한 경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
부의 지원

4.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

<신 설>

<신 설>

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
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
또는 일부의 지원

5. 제73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
사업의 지원

6.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

7.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연구
및 기술 개발

8.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

9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
를 위한 경비의 지출

제119조의5(기금의 관리·운용)

① 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·
운용한다.

② 경찰청장은 기금의 관리·
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
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은 기금
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를
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
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로 정한다.

제119조의6(회계연도) 기금의 회

	<u>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